

70% - 재개방 첫 단계	80% - 재개방 심화 단계	2021년 12월 1일 - 전면 재개방
백신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항 대부분의 업소에서 직원과 이용자의 입장시 ‘COVID세이프 체크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과 예방접종증명서의 제시가 요구됨 • 직원 및 이용자 대상 방역규제 적용중인 NSW 지방지역의 업소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차 이상 접종받은 직원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직장 업무복귀 가능 (단, 2021년 11월 1일까지 2차접종 완료가 요구됨) • 아래 기재된 일부 활동과 관련하여 실내공간의 경우 시설면적4m²당 1명, 실외공간의 경우 2m²당 1명의 인원밀집도 제한이 적용됨 • 코로나19 안전 계획 적용		모든 사람에 허용되는 사항 아래 기재된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내·외 공간에서 시설면적2m²당 1명의 인원밀집도 제한이 적용됨
 마스크, QR 코드	>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을 포함한 모든 실내공간 이용시 모든 직원과 모든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 (12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 > 실외공간에서는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요식업소의 고객상대 근로자는 의무착용) > 직원과 이용객은 입장시 ‘COVID세이프 체크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과 예방접종증명서의 제시가 요구됨	> 마스크 의무착용은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이용시와 요식업소의 고객상대 실내 근로자에만 적용 >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요식업소의 고객상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 >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의 의무제시 해제
 가족·친지 방문	> 자택의 방문자 수가 한번에 1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 (방문자 인원제한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실외의 소규모 사적모임과 여가활동은 최고 30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2명으로 제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방문은 각 시설의 방침을 따르도록 허용	> 자택 방문자 인원수 무제한 > 실외의 사적모임과 여가활동은 집합인원수 무제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방문은 각 시설의 방침에 따라 허용
 운동, 여가활동	> 운동과 여가활동 목적의 외출시 이동거리 제한 없음 > 헬스장, 실내여가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클래스당 참석인원이 최대 20명인 범위내에서 영업재개 > 실내수영장은 교습, 훈련, 재활 활동용으로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 헬스장, 실내여가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참여인원 제한 없음 > 실내수영장은 모든 사용목적으로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은 모든 직원, 관중, 선수의 참여 허용

16세 미만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직장과 모든 실외공간에 보호자 없이 입장이 가능하지만, 요식업소(포장식사 구매는 허용), 공연문화시설, 대형 여가시설 이용시에는 접종을 완료한 동거가구의 보호자 없이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별도의 수칙과 규제가 시행중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nsw.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2021년 10월 15일 시점기준 정확한 정보입니다 | 1

NSW 재개방



	70% - 재개방 첫 단계	80% - 재개방 심화 단계	2021년 12월 1일 - 전면 재개방
	백신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항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사항
 학교	> COVID-19 안전조치 단계 3적용시 학교 재개방 (education.nsw.gov.au에서 확인) > 2021년10월 18일부터 단계별로 등교 복귀를 시작하여 10월 25일까지 모든 학생의 대면수업 복귀 완료	> COVID-19 안전조치 단계3 적용시 학교 재개방 (education.nsw.gov.au에서 확인) > 2021년10월 18일부터 단계별로 등교 복귀를 시작하여 10월 25일까지 모든 학생의 대면수업 복귀 완료	> 학생 대면수업 복귀 완료
 쇼핑, 개인서비스	> 비필수 소매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영업재개 (접종 미완료자의 비필수 소매업소 이용은 온라인 구매후 자가픽업하는 ‘클릭앤 컬렉트’ 방식으로 제한) > 개인서비스업소(이·미용시설, 사우나, 뷰티서비스, 네일샵, 문신시술소, 마사지장 등)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이용객 최대 5명의 범위내에서 영업재개	> 비필수 소매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영업재개 (접종 미완료자의 비필수 소매업소 이용은 온라인 구매후 자가픽업하는 ‘클릭앤 컬렉트’ 방식으로 제한) > 개인서비스업소(이·미용시설, 사우나, 뷰티서비스, 네일샵, 문신시술소, 마사지장 등)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인원제한 없이 영업재개 > 성매매업소 영업재개	> 비필수 소매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전 고객 대상 영업재개 > 개인서비스업소(이·미용시설, 사우나, 뷰티서비스, 네일샵, 문신시술소, 마사지장 등)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 업장내 섹스 업소(SOPV)와 성매매업소는 4m²당 1명의 밀집도 제한으로 영업 가능
 식당, 요식업	> 요식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예약당 손님 20명 범위내에서 영업재개 (접종 미완료자는 포장식사 구매만 가능) > 실내공간에서 노래부르는 안됨 (공연자의 라이브 공연은 허용) > 실내공간에서 음료와 주류의 음용은 좌석 착석시에만 가능. 실외공간에서는 착석여부에 관계없이 음용 가능 > 댄스는 실외공간에서만 가능. 실내 댄스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결혼식의 경우는 허용)	> 요식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예약당 손님 20명 범위내에서 영업재개 (접종 미완료자는 포장식사 구매만 가능) > 실내공간에서 노래부르는 안됨 (공연자의 라이브 공연은 허용) > 댄스는 나이트클럽을 제외한 실내공간과 모든 실외 공간에서 가능 > 음료와 주류의 음용은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 좌석착석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	> 요식업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에서 노래와 댄스 가능 > 음료와 주류의 음용은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 좌석착석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
 재택근무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직원이 재택근무를 계속하도록 반드시 허용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접종 미완료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구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직원이 재택근무를 계속하도록 반드시 허용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접종 미완료 직원이 반드시 재택근무를 계속하도록 요구	>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

16세 미만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직장과 모든 실외공간에 보호자 없이 입장이 가능하지만, 요식업소(포장식사 구매는 허용), 공연문화시설, 대형 여가시설 이용시에는 접종을 완료한 동거가구의 보호자 없이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별도의 수칙과 규제가 시행중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nsw.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2021년 10월 15일 시점기준 정확한 정보입니다 | 2

70% - 재개방 첫 단계		80% - 재개방 심화 단계	2021년 12월 1일 - 전면 재개방
백신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항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사항
문화행사, 공연	> 대형 실외여가시설(스포츠경기장, 놀이공원, 경마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수용인원 최고 5,000명까지, 또는 제한 면제를 받은 경우, 영업재개 > 공연문화시설(상영관, 공연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또는 고정좌석 수용인원의 75%까지 인원제한하여 영업재개 > 정보교육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영업 재개 > 실외공간 집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입장권을 사용하여 좌석배치한 경우 500명까지 가능 > 놀이·오락시설과 나이트클럽은 종전대로 영업 금지	> 대형 실외여가시설(스포츠경기장, 놀이공원, 경마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수용인원 최고 5,000명까지, 또는 제한 면제를 받은 경우, 영업 가능 > 공연문화시설(상영관, 공연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또는 고정좌석 수용인원의 75%까지 인원제한하여 영업 가능 > 정보교육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영업 가능 > 실외 모임은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하에 200명까지 집합 가능 > 실외공간 집회는 밀집도 제한 적용시 통제관리(공간경계 울타리, 지정좌석 배치)된 경우 3,000명까지 집합 가능 >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은 음료 및 주류 음용시 착석이 요구되며 춤추는 행위 금지시 영업재개	> 대형 실외여가시설(스포츠경기장, 놀이공원, 경마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 또는 고정좌석 수용인원의 100%로 입장인원 무제한 > 공연문화시설(상영관, 공연장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 또는 고정좌석 수용인원 100%로 입장인원 무제한 > 정보교육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 실외공간 집회는 입장권 사용, 좌석배치 적용시 인원제한 없음. 1,000명 이상 집합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요구됨 >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은 시설면적4m²당 1명의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여 영업 가능. 음료와 주류 음용시 착석의무 해제. 춤추기 허용됨 > 놀이·오락시설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영업재개
예식, 종교활동	> 결혼식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 (접종 미완료자 참석은 5명까지로 제한) > 결혼피로연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은 착석시 가능. 춤추기 허용 > 장례식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 (접종 미완료자 참석은 10명까지로 제한).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은 착석시 가능 > 종교시설은 밀집도 제한 적용시 재개방 > 종교시설과 종교예식 거행시 접종완료자에 한해 10명까지 노래 가창 가능	> 결혼식 참석은 인원제한 없음 (접종 미완료자 참석은 5명까지로 제한) > 결혼피로연 참석은 인원제한 없음 (접종 미완료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시 착석의무 해제. 춤추기 허용. 밀집도 제한 적용됨 > 장례식 참석은 인원제한 없음 (접종 미완료자 참석은 10명까지로 제한).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시 착석의무 해제. 밀집도 제한 적용됨 > 종교시설은 밀집도 제한 하에 접종 미완료자 포함 재개방 > 종교시설과 종교적 예식 거행시 접종완료자에 한해 10명까지 노래 가창 허용	> 결혼식은 참석인원 무제한 허용.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시 착석의무 해제. 춤추기 허용. 밀집도 제한 적용됨 > 장례식은 참석인원 무제한 허용. 음식섭취와 음료 및 주류 음용시 착석의무 해제. 춤추기 허용. 밀집도 제한 적용됨 > 종교시설 개방. 참석인원 전원 노래부르기 허용. 밀집도 제한 적용됨
여행, 이동	> 소속 지자체 권역내에서만 이동 가능. 5km 반경 이동제한은 해제 > 시드니 광역(센트럴코스트, 울롱공, 셸하버, 블루마운틴 포함)과 NSW 지방지역 간의 이동(당일여행 포함)은 허용되지 않음 > 지방소재 지자체 권역간의 휴가여행은 허용됨 > 자동차 쉐어 허용 (접종 미완료자는 동거가족간 쉐어만 가능) > 캐러밴 파크와 캠핑장 영업재개 (접종 미완료자 포함)	> 접종이 완료된 해외 여행자의 입국시 격리의무가 11월 1일부터 전면해제됨. 단, 중합요소연쇄반응(PCR) 검사를 받고, 치료용품행정처(TGA)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증되어, 연방정부로부터 접종증명 인증이 완료된 자에 한함. > 접종 미완료 해외 여행자는 11월1일 이후에도 입국시 14일간의 격리의무가 종전대로 요구됨. 입국자 수에 대한 제한 적용. > 시드니 광역(센트럴코스트, 울롱공, 셸하버, 블루마운틴 포함)과 NSW 지방지역 간의 이동(당일여행 포함)이 허용됨 (접종 미완료자는 허용되지 않음) > 자동차 쉐어 허용 (접종 미완료자는 동거가족간 쉐어만 허용) > 캐러밴 파크와 캠핑장은 종전대로 영업 가능 (접종 미완료자 포함)	> 시드니 광역과 NSW 지방지역간의 이동 및 여행 (휴가 포함) 허용 > 자동차 쉐어 전면 허용 > 캐러밴 파크와 캠핑장은 종전대로 영업 가능 (접종미완료자 포함)

16세 미만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직장과 모든 실외공간에 보호자 없이 입장이 가능하지만, 요식업소(포장식사 구매는 허용), 공연문화시설, 대형 여가시설 이용시에는 접종을 완료한 동거가족의 보호자 없이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별도의 수칙과 규제가 시행중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nsw.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